

## ■ 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질의 사항

### ○ 질의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 ○ 질의 사항(사단법인 탁틴내일)

1. 동남아 빈곤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의 해외성매매 관광 현황을 알고 있는가?

- 필리핀 현지에서는 다 사라져가던 앙헬레스라는 도시의 환락가가 몇 년전 한국 모항공사의 직항이 생긴 후 다시 최대의 성매매 집결지가 되었음.

2. 전국가적으로 한류 바람을 타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성매매 관광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문화관광체육부는 반 한류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지 아니한가? 그러니 문화관광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 답변 내용

질의자 : 2013년도국감-교육문화체육관광(부록)(2013년11월1일) 유은혜위원

1. 해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근절해야

1) 동남아 빈곤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의 해외 성매매 관광 현황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는지?

○ 해외 성매매는 비공식적,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속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록 여행사에서 성매매 상품 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성매매 관광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 불건전 여행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 여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여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대국민 대상 공정 건전여행 캠페인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불건전 여행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공정 건전여행 캠페인 및 홍보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 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질의 사항

- 질의 대상 : 법무부
- 질의 사항(사단법인 탁틴내일)

1. 동남아시아에서 성착취를 위한 아동 청소년 인신매매가 문제되고 있다. 한국 관광객이 인신매매를 부르는 성매수의 주요 고객이고 특히 필리핀에서는 코피노라 불리는 한국혼혈아들이 1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들은 해외 성매수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해외 성매매 단속에 따른 처분도 2명 외에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해외 성매매를 방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2.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들이 있다. 예를들면 EUROPOL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HAVEN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해외 이동시 이를 알리는 협약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HAVEN 외에도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협약에 가입하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국가간 협약을 주도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가?
- EUROPOL의 프로젝트 HAVEN(Halting Europeans Abusing Victims in Every Nation)
- 항구적이고 예방적인 아동 성범죄자 고지 시스템 확립을 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 HAVEN은 2010년 11월에 시작되었고, 2012년 1월에 프로젝트 2단계 공동 행동의 날이 조직되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관계 당국은 아동 성관광 목적지 국가로 알려진 나라에서 도착한 사람들을 조사/프로파일링하며,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당 국가의 공항을 통과하는 승객에 대한 정보 역시 교환한다.

## ○ 답변 내용

질의자 : 2013년도국감-법제사법(부록)(2013년10월17일) 서영교위원

해외 성매매 적발인원 중 2명 외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파악된 해외 성매매사범은 총 693명이나, 정확한 처분 내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검찰통계시스템은 죄명별로 관리되고 있어, 해외 성매매 사범을 별도 추출 불가

○ 다만, 성매매사범의 경우 국내·해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초범인 경우에는 재범방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정식기소하여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원정 아동성매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

○ 해외원정 아동성매매사범을 엄정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 다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아동성매매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해외원정 아동성매매의 실태, 처벌 강화의 필요성, 주요 외국 입법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행법상 아동성매매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법 제13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아동법 제15조제2항제3호)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아동법 제15조제1항제2호)

우리나라가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는지? 만약 가입해 있지 않다면, 앞으로 가입하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 우리나라는 1991. 11. 20. 성매매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 또한, 2004. 9. 24. 위 '유엔 아동권리협약' 보충 의정서인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 의정서'에도 가입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위와 같은 국제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성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안전행정위원회 질의 사항

### ○ 질의 대상 : 경찰청

### ○ 질의 사항(사단법인 탁틴내일)

1. 경찰청의 해외 성매매 사범 단속과 검거는 성을 판 한국인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치 이를 용인하듯 한국인 성매수자에 대한 파악은 전무한 실정임. 청장은 이 상황을 알고 있는가? 해외에 파견된 경찰 현황은 어떠하며, 파견 경찰들이 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직무 유기 아닌가?
2. 국내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가해자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경험과 피해자 신상까지 인터넷에 올려 인권유린을 일삼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경찰 인력 증원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 답변 내용

질의자 : 2013년도국감-안전행정(부록)(2013년10월15일) 진선미의원

경찰청의 해외 성매매 사범 단속과 검거는 성을 판 한국인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치 이를 용인하듯 한국인 성매수자에 대한 파악은 전무한 실정인데, 해외에 파견된 경찰 현황은 어떠한지, 파견 경찰들이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물으셨습니다.

○ 경찰(외사수사과)은 해외 성매매 행위에 대해 상시·집중단속 및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최근 5년간 1,319명의 해외성매매 사범을 검거하였으며, 이 중 557명(42.2%)의 해외 성매수자를 검거하는 등 한국인 성매수자에 대한 검거활동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성매매 사범 검거 현황(08년~12년)>

구분	유형			
	합계	성매매 알선자 등	성매도자	성매수자
총계(명)	1,319	344	418	557
비율(%)	-	26.2	31.6	42.2

※ 13년 3분기까지 해외성매매 사범 총 379명 검거(알선자 123명, 매도자 229명, 매수자 27명)

○ 경찰은 골프관광 등을 빙자한 내국인 남성들의 해외성매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전개하여 성매도 뿐 아니라 성매수 행위 역시 근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13.7.3~13.8.31(60일간) 해외성매매 기획수사 실시, 183명 검거

※ 13.11.1~14.1.31(90일간) 해외 성매수자 대상 기획수사 예정

○ 아울러 해외성매매의 특성상 성매수·매도 행위가 상호간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범죄근절에 어려움이 있으나 해외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찰기관과 협력, 범죄첩보를 수집하는 등 해외 성매매 검거·예방을 위한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경찰주재관 파견 현황 : 32개국 53개 공관 61명

국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제로 가해자가 청소년 대상 성매수 경험과 피해자 신상까지 인터넷에 올려 인권유린을 일삼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경찰 인력 증원에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성매매업소가 집중되어 있는 학교·주택가 주변을 CLEAN 지역으로 선정,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상 성매매 알선·광고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채팅사이트 중심의 성매매업소 첨보 수집을 강화하고 성매매알선 등 불법사이트 발견 시 방통위 요청,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범죄 피해자들의 영상물·화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거나 소지한 자들을 적극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시행 중(13.4월~10월)

※4.1~10.16 간 아동음란물사범 총 2,358건  
2,527명 단속(구속14)

○ 앞으로도 아동음란물 사범을 상시 단속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의 신상 공개 등 명예훼손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고소의견을 확인하여 적극 수사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등 처벌의사를 확인하여 수사

## ■ 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질의 사항

- 질의 대상 : 여성가족부
- 질의 사항(사단법인 탁틴내일)

1.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인신매매를 부추기는 해외 성매매, 특히 아동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
2. 해외 현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그 중 아동 대상 성매매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3. 성관광 뿐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 종사자, 유학생 등 현지 거주자들의 성매매와 인권유린 행태 역시 전해지고 있다. 직원들이 현지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인권유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기업은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여성가족부가 관련부처와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유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부모들의 생활지도 책임도 강조해야한다.
4. 성착취에 의해 태어나고 버려진 한국인 혼혈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야 하지 않는가? ODA를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5. 범죄로부터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약들이 있다. 예를 들면 EUROPOL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HAVEN의 경우,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해외 이동시 이를 방문국에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협약에 가입하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국가간 협약을 법무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가?

## ○ 답변 내용

질의자 : 2013년도국감-여성가족(부록)(2013년11월6일) 이재영의원

### 3.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내실화 방안에 대해 지적 하셨습니다.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은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성매매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 부 차관을 단장으로 17개 부처의 국장급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종합대책(2004~) : 17개 과제 48개 시책 포함

-(예방) 4개 과제 9개 사업, (보호) 5개 과제 17개 사업, (집행) 8개 과제 22개 사업

□우리 부는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심제고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는 분기별 회의 개최 시마다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지난 9월 회의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해외 아동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도 3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기로 외교부 및 법무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 <13년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 주요 실적>

※국내 수사기관 적발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여권발급 제한 업무지침 개정)

— 그동안은 외국 정부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우리 재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 발급 제한이 이루어짐(08~13.6 총 64건).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13.4, 6월)

(기준) 1년내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변경) 3년내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장애인,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배제하고 정식기소하는 등 법집행 강화(13.6~)

□앞으로도 우리 부는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점검단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 해외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근절을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질의 사항

- 질의 대상 : 외교부
- 질의 사항(사단법인 탁틴내일)

1. 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해외성매매를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어글리 코리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영사 콜센터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제2의 외교관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품위있는 여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려주세요." 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은 없는가?

2. 아동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들이 있다. 예를들면 EUROPOL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HAVEN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이 해외 이동시 이를 알리는 협약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HAVEN 외에도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들이 있다고 들었다. 이러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협약에 가입하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국가간 협약을 법무부와 함께 주도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가?

\*\* EUROPOL의 프로젝트 HAVEN(Halting Europeans Abusing Victims in Every Nation)

항구적이고 예방적인 아동 성범죄자 고지 시스템 확립을 목적으로하는 프로젝트 HAVEN은 2010년 11월에 시작되었고, 2012년 1월에 프로젝트 2단계 공동 행동의 날이 조직되었다. 프로젝트를 통하여 관계 당국은 아동 성관광 목적지 국가로 알려진 나라에서 도착한 사람들을 조사/프로파일링하며, 루마니아, 스페인,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당 국가의 공항을 통과하는 승객에 대한 정보 역시 교환한다.